

건설기술인 행정처분 공고

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24조 등을 위반한 아래 기술인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고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1월 1일
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

1. 대상자

당사자(건설기술자)		처분내용	처분의 원인사실
성명	생년월일		
이승길	68.08.21	업무정지 4개월 (2023. 11. 16. ~ 2024. 3. 15.)	근무경력 거짓신고
정두성	70.09.15	업무정지 3개월 (2023. 11. 16. ~ 2024. 2. 15.)	근무경력 거짓신고
박영규	64.03.10	업무정지 3개월 (2023. 11. 16. ~ 2024. 2. 15.)	근무경력 거짓신고
서재원	67.01.11	업무정지 3개월 (2023. 11. 16. ~ 2024. 2. 15.)	근무경력 거짓신고
양준식	63.04.02	업무정지 3개월 (2023. 11. 16. ~ 2024. 2. 15.)	근무경력 거짓신고
심경호	58.03.13	업무정지 12개월 (2023. 11. 16. ~ 2024. 11. 15.)	건설기술경력증 대여
전청균	72.07.14	업무정지 12개월 (2023. 11. 16. ~ 2024. 11. 15.)	건설기술경력증 대여
박민정	82.07.27	업무정지 12개월 (2023. 11. 16. ~ 2024. 11. 15.)	건설기술경력증 대여

2. 법적근거

-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[별표 1]
- 舊 「건설기술관리법」 제6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[별표 3]
- 舊 「건설기술관리법」 제6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4 [별표 2]

3. 유의사항

-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(송달일)부터 90일,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, 「행정소송법」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,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4. 기타

- 위 공고문과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행정처분 담당자(02-2110-6730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